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발행일 2021. 01. 20.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검찰개혁·직무수행의 공정성·민생·인권·
코로나19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

I. 들어가며	3
II. 법무부장관 직무수행 및 공정성 확보	4
1.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4
2.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 중인 경우의 이해충돌	4
3. 후보자가 지분 소유한 법무법인 관련 이해충돌	5
III. 법무·검찰 개혁	6
4. 검찰 직접수사 축소	6
5.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및 업무 폐지	6
6.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7
7. 법무부 탈(脫) 검찰화	7
8.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8
IV. 검찰의 인권 친화적 수사	9
9. 재정신청제도 확대	9
10. 피의사실 공표	9
11. 심야조사 근절	9
V. 법조 윤리	11
12.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11
13. 검사 징계 강화	11
VI. 법무행정/인권/민생 관련 질의	13
14.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및 정원 확대	13
15. 사형제도 폐지	13
16.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14
17.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등 개정	14
18. 통신비밀보호법 재개정	15
19.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제 도입 관련	15
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16
21.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16
22. 교정시설 코로나19 예방 대책과 과밀 관련	17

I. 들어가며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오는 1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직무수행의 공정성·민생·인권·코로나19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지난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검찰개혁에도 힘을 쏟아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정책적으로 보호, 구현해야 하는 국가 법무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에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적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장관 직무수행시 이해충돌 문제, 민생과 인권 강화 조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기된 여러 새로운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II. 법무부장관 직무수행 및 공정성 확보

1.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추미에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세 차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수사지휘권이 남발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과거의 음성적인 수사외압, 개입에서 벗어나 문서화되고 수사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형태로 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통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사법처리과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 강력한 권력기관인 만큼,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 개별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기준과 방식에 따라 행사 가능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시시오.

2.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 중인 경우의 이해충돌

후보자는 2019년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과정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 2021년 1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합니다(검찰청법 34조). 또한,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검찰청법 35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합니다(검찰청법 8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형사소송법 제246조)합니다.

즉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하고 보직과 관련된 인사권을 가진 검사(이하 담당 검사)가 후보자 개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유지와 구형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담당 검사는 각각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법무부장관과 담당 검사 각각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본인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될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위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후보자가 지분 소유한 법무법인 관련 이해충돌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설립했습니다(2020년 3월 재산공개자료 기준: 출자가액: 10,000천원, 지분비율: 7.143%). 한편, 후보자가 2012년 이래 3선 국회의원으로서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해충돌의 문제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했으나 2012년 6월 변호사를 휴업했고, 국회법 상 겸직금지가 시행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후보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명패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자 후보자는 지난 1월 14일 해당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해당 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무법인이 후보자의 이름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정활동과 직무연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이미 지분을 매각하여 향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사라졌지만, 국회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위 법무법인 지분을 보유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무수행간의 이해충돌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III. 법무·검찰 개혁

4. 검찰 직접수사 축소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안’은 6대 범죄에 대한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두어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유의미하게 축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시즌2’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직접수사 범위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 조정해야 실질적인 직접수사 축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검찰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밝혀주시요.
- 검찰의 직접수사 6대 범죄 가운데 추가로 축소, 폐지할 부분을 밝혀주시요.
- 2021년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는 과거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들에서는 여전히 직접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다시금 조직 및 인력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서를 포함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검찰청 조직과 인력 축소나 조정 계획을 밝혀주시요.

5.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및 업무 폐지

지난해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구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직무와 무관하게 주요 형사사건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 소속 법관의 성향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수집,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판사 사찰’이라 불리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징계혐의로 인정됨은 물론 비록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현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018년 2월 검찰 직접수사 폐지 기조에 맞추어 구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축소 개편된 부서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무관한 과도한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19년 10월 조직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사 사찰’논란을 통해 대검의 정보수집기능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검 정보 수집권한 축소 또는 폐지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6.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형사법제과는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1기,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18년 6월과 2019년 10월에 법무실 이전을 권고하였으나, 2021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법무실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법무부 탈(脫) 검찰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내 주요 요직에 현직 검사가 과도한 비중으로 임명되어 검찰에 대한 견제 및 관리감독 기능이 형해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검사가 독점해오던 법무부 내 직위 61개 중 44개 직위에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게 복수직제화하였고, 실제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에 비(非)검사가 임용되는 등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 검찰국에 대해서는 검찰국장 등이 여전히 검사만 보임 가능하거나,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는 복수직제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검사가 보임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진합니다. 2019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검찰국을 포함해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검사로 신규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감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문재인정부는 감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를 약속한 바 있으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법무부를 포함 35개 외부기관에 51명의 감사가 파견돼 있었습니다. 다른 정부 기관에 파견된 감사를 통해 검찰의 음성적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정부기관과의 친소관계 형성 등 해당 기관의 비리를 수사할 때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감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로스쿨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다는 점 등 감사가 정부 다른 기관에서 법률전문가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의견도 큼니다.

- 외부기관 감사 파견의 축소 및 폐지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IV. 검찰의 인권 친화적 수사

9. 재정신청제도 확대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말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고발사건까지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큼니다.

- 재정신청제도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10. 피의사실 공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이로 인한 언론의 수사상황 실시간 보도 및 여론몰이 등 재판 전에 사실상 검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예단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커짐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소 후에는 수사상황 등을 일정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규칙 제 11조).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는만큼 배심제 도입 국가들이 유죄 심증을 심어줄 우려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소위 ‘홀리기’, ‘백브리핑’이 아닌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때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행 관련 전반적인 관리감독 계획과 개선책을 밝혀주시시오.

11. 심야조사 근절

법무부는 검찰의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등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난 2019년 말 공포,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705건의 심야조사가 진행되어 여전히 심야조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단순히 도입해서 발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현실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심야조사 근절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이행 관련 전반적인 관리감독 계획과 개선책을 밝혀주시시오.

V. 법조 윤리

12.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변호사의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응답자 53.9%, 법조 종사자 58%는 전관예우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 검찰수사단계를 꼽았습니다.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서 검찰 내 사건배당제도의 투명성 개선,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한시적 제한,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 전관예우/전관비리가 만연한 원인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검사 징계 강화

검사의 징계는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대검이 청구한 징계 수위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는 사례가 언론에 왕왕 보도됩니다. 예를 들어 후배 여성 검사 및 후배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검은 해임을 청구했음에도 법무부는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하게 교류하면서 자금을 차용하고, 휘하 주임검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외국을 여행하면서 '파친코' 게임장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대검은 면직을 청구했으나 법무부의 처분은 정직 4개월에 그쳤습니다.

최근에는 현직검사 3명이 '라임사태' 수사 전에 김봉현 전 회장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향응을 접대받아, 그중 기소되지 않은 2명이 감찰 절차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검사 2명은 이미 검찰수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밝혀졌음에도 1달이 지나도록 감찰 결과 및 징계 회부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비위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징계는 검찰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검사징계 실효성

확보가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감사징계법 또한 개정되어 오는 2월부터 감사징계위원회 위원수가 7명에서 9명으로 확충 및 외부위원의 비중도 확대됩니다.

- 감사의 부적절한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과 징계 강화 계획을 밝혀주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정직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그 징계의 과정과 절차, 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회부와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VI. 법무행정/인권/민생 관련 질의

14.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및 정원 확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수준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두고 법조인 수급상황, 응시인원 증감 등을 고려해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정원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변호사시험에서는 **3,316명** 중 **1,768명**이 합격해 응시자의 **53.32%**,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88.4%**에 해당하는 합격률을 기록해 역대 최대 합격인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격시험화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무리없이 변호사자격을 딸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완전히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법무부가 발주해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조인 수는 **2018년** 기준 인구 1만명당 **5.01명** 수준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2.09명**, 독일 **23.11명**, 프랑스 **11.58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직장인, 사회인들을 위한 야간·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원을 폐지하여 완전한 자격시험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시오.
- 변호사 정원의 확대 및 야간·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법조인 자격 취득의 문턱을 낮추고 법조인의 사회적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5.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는 대상자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기에 잘못된 재판임이 밝혀져 향후 무죄가 나와도 되돌릴 수 없고, 범죄 억지력 또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9월**, 정부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한국정부는 유엔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중단) 결의안에 기권해왔지만, 지난해 12월 16일, 75차 유엔 총회 본회의의 8번째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최종 찬성 입장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16.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언어가 만연하고 계층·계급 간 불평등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17.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등 개정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인 이른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공익소송이 크게 위축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 소송비용 문제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패소자부담주의를 취하면서도, 소송의 공익적 성격이나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별도의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사소송법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에 국가가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는 등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면제/감경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등 패소자부담주의 일괄 적용하는 것에 예외 사유를 법률로 두는 방향의 관련 법 개정 요구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 통신비밀보호법 재개정

2018년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0년 3월 4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발의 한달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반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적법성을 다룰 수 있는 장치는 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는 등 헌재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헌재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반하게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중 재개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19.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제 도입 관련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K리그 올스타전 호날두 초청경기 결장에 따른 입장권 환불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해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두 법안의 처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 법무부가 제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배제 개정안(상법) 법안처리를 위한 향후 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어 4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다시 다른 집을 알아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료 상승폭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4년마다 한번씩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통과된 전월세 임대차법 개정안의 한계와 우려에 대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무엇입니까?
-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 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21.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소득 및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반복되는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에 인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상가임차인들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임대료면춤법' 등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면춤법'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은 무엇이라 보며, 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22. 교정시설 코로나19 예방 대책과 과밀 관련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확진자수는 급격히 늘어 1월 19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수는 1,2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방역 체계상의 문제점에 더하여 근본적으로는 수용소의 과밀화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 7,990명인데 반해 2019년 일일평균 수용 인원은 5만 4,624명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가장 최선의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인 반면, 과밀수용되어있는 교정시설은 이와 같은 대책이 어렵습니다.

- 동부구치소를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수용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검찰개혁·직무수행의 공정성·민생·인권·코로나19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

발행일 2021. 01. 20.

발행처 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강자·하태훈)

담당 김태일 선임간사 02-723-0666 jw@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